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2
----------	------

제출일자 : 2022. 12. 6.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사회복지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게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7조)
- 나. 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을 사회복지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에 의거 정비 함. (안 제8조)
- 다. 위원회의 임시회를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하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 함.(안 제11조)
- 라. 위원의 해촉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사회복지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에 의거 정비 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내지 제4조의6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2. 10. 28. ~ 11. 17.)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게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제1항 전단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해촉 등)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2. (생략)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u>권리 보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제7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u>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게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u>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u>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u>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u>10명</u>-----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u>사회복지기관의 장</u> 2. <u>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u> 3. <u>관련 업무 담당 대구광역시 달성군 5급 이상 공무원</u> 4. <u>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u>15명</u>-----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u>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2. <u>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u> 가. <u>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u> 나.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u>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u> 3. <u>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u> 4. <u>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u>

현행	개정안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 ③ (생략) ④ -----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u>위원장이</u> 소집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해촉 등)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1. <u>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u> 2. <u>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u> 3. <u>위원 본인이 해촉이나 임명 취소를 원하는 경우</u>	제12조(해촉 등)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u>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u>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 3.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u> 4.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u>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96호, 2022. 6. 14. 일부개정)

제4조의2(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4조의4까지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앙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2. 6. 14.]

제4조의3(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 6. 14.]

제4조의4(중앙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4.]

제4조의5(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2022. 6. 14.]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임·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제4조의5,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4.]

[시행일 2022. 6. 22.]

